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 연구개발시설의 인정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위원회 소집 사유에 내국인이 투자하는 대상 시설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또는 신성장 연구개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제기된 경우도 포함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6. 2. ~ 6.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산업혁신성장실장”을 “산업기반실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영 제2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라. 영 제21조제4항제4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 장 및 산업통상자원부 <u>산업혁신</u> <u>성장실장</u> 이 공동으로 된다.	② ----- ----- <u>산업기반</u> <u>실장</u>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로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교 대로 그 의장이 된다.	제4조(위원회의 개최) ①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내국인이 투자하는 대상 시 설이 다음 각 목의 시설에 해 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내국인의 질의가 있는 경우 가.·나. (생 략)	2. ----- ----- ----- -----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영 제21조제4항제3호에 따른 <u>신성장연구개발시설</u>
<신 설>	라. 영 제21조제4항제4호에 따른 <u>국가전략기술연구개 발시설</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